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545
결재일자	2015. 1. 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22호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강들	이정희	이윤영	김종순	01/15 이비오
협조				

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계획



성 동 구
(기 획 예 산 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● 중점 홍보사항 - -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-

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

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」을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[시행 2015. 1. 1.]
-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(행정자치부령 제4호) [시행 2014. 11. 29.]

II 추진 방향

-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에 적합하게 개정
-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

III 주요 개정사항

-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대신함(안 제11조)
- 상위 규칙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재심사 규정 삭제(안 제4조)
 -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제6조 적용으로 재심사 규정 삭제
- 상위 규칙에 따라 “투·융자사업”을 “투자사업”으로 용어 변경

■ 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함

-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 통합운영

《 지방재정법 》

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준용

《 지방재정법 》

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"는 "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"로 본다.

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- 주요 준용 내용

- 위원수: 9명 이내→15명 이내
- 위원장: 부구청장 → 민간위원 중 호선
- 위촉위원 임기: 2년 → 3년

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상충 되는 사항 변경

-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제6조 적용으로 재심사 규정 삭제
- 용어 통일: 투·융자→투자

VI 향후 추진 계획

-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----- 2015년 1월 중
- 규칙 입법예고 ----- 2015년 1월 중
- 법제심사 ----- 2015년 2월 중
- 조례 · 규칙 심의회 심의 ----- 2015년 2월 중

붙임: 1.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2.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. 끝.